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정을 해소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(안 제8조)
 - 당초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
 - 변경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타 시군의 지원 대상자 범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